



## 美國에도 工所權 研究所 탄생

### 우리나라 첫 研修者는 特許廳 羅基相과장

知的所有權分野에 관한 海外研修機關으로는 그동안 프랑스의 CEPI(工所權研究센터)가 있었으나 美國에는 이러한 機關이 없었다.

그런데 最近 美國에도 非營利法人 Franklin Pierce Law Center가 設立되어 올해부터 첫研修를 實施하게 되었다.

開途國 및 기타 工所權制度의 強化를 필요로 하는 國家들을 대상으로 工業所有權關係者 및 科學과 技術에 관심 있는 者들로부터 매년 申請을 接受받으며 FPLC의 경우 올해는 8月 11日부터 다음해 7月末까지 1年間의 과정으로研修를 實施하게 된다.

申請對象者は 大學수준의 강의를 英語로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경비한 者에 한하여, 서류검토후 入學을 허락받게 되며研修料는 절반을 本人이 부담하게 된다(거주비·교재비제외 1만불 정도)

이 FPLC의研修과정은 크게 3個 코스로 이루어지는데 첫코스에서 美國法制度, 즉 美國內에서 知的所有權의 實際와 行政에 대한 소개가 있게 되며 이어 特許·技術移轉·商標·著作權·國際비지니스·美國法 등을 주제로 한 研究發表 및

세미나가 있고 個人法律事務所와 美國會社들의 特許部署, 美國特許·商標廳에서 10주간의 實務 및 行政을 익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中共에서는 다수의 研修生들이 登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特許廳 羅基相과장이研修하게 된다.

## 美國, 特許法改正 움직임

### 이미 美上院 小委員會 審議마쳐

美上院「特許·著作權·商標小委員會」는 方法特許와 農藥特許에 관한 2件의 特許權強化法案의 審議를 마쳤다. 法案의 骨子는 方法特許의 特許權者에 대해 侵害品輸入禁止에 관한 權利를 認定하는 것과, 醫藥品과 같은 農藥도 製造許可의 行政手續에 必要한 期間分만큼 特許期間의 回復을 認定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法案은 모두 第98聯邦議會로 넘겨지게 되므로 몇 가지 重要的修正이 行해졌다. 즉, 方法特許 保護法案은 ① 侵害者에 대한 警告의 경우 特許權者에게 義務를 附與하고, ② 損害額의 計算에 限度를 設定하고, ③ 輸入된 物品이 特許된 方法을 利用해서 製造된 物品임이 비슷한 때 또한原告가 特許된 方法이 利用되었다는 것을 誠實하게 立證함을 努力하였다. 그 事實을 立證할 수 없다라도

當該物品은 特許된 方法을 利用하여 製造된 것이라고 推定한다』等의 規定이 追加되었다.

또 農藥特許期間回復法案의 修正에서는 『① 一般的 藥品製造技術에 關한 特許와 遺傳子組織變換技術에 關한 特許로서 期間延長의 取扱을 區別하고 있었던 規定을 삭제한다 ② 延長한 特許期間의 計算基礎를 製造許可에 所要된 全期間으로 한다』는 것이 注目되었다. 그런데 兩法案의 審議는 關係業界와 消費者·環境 Group과의 調整이 끝나있어 앞으로 더욱 빠른 速度로 이루어질 것으로豫想되고 있다.

## 日, 特許廳 國際課 新設

日本 通產省은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應하기 위해 最近 特許廳 總務部에 國際課를 新設했다. <略>